



# 국가인권위원회공보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8월 15일

제 18권 제 4호

## 알 릫

-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목 차 -

### 공 지 사 항

1	인사발령 등 .....	586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	589
3	진정접수 · 상담 · 민원 · 안내 처리 현황 .....	593
4	진정사건 처리 현황 .....	595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1 2020. 5. 21.자 결정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60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인격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 【1】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내 사용자 또는 노동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장 외부의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
- 【2】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
- 【3】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
- 【4】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인권존중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사업주의 법률상 의무로 명문화할 것,
- 【5】 대표이사·사업주 등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조치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복할 경우 등에 대하여 사업장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 2020. 5. 26.자 결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상훈 추천 배제 관련 제도 개선】 ..... 617**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3 2020. 5. 26.자 결정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 625**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행 개선 방안 마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포함 의견 표명
- 【2】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업체 선정기준 개선 의견 표명
- 【3】 피진정인들에게, 여성혐오·차별 언행 방지 및 창작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 중단, 피해자들의 관련 업계 복귀 환경 조성 의견 표명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1 2020. 4. 16.자 결정 19진정0651700 【경찰의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 **646**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현행법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 전파 및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2020. 4. 16.자 결정 20진정0068100 【경찰의 불법체포 및 과도한 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 **651**

○○○○경찰서장에게,  
 [1]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향후 현행법인 체포 및 수갑사용 시 이 사건과 같이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2020. 5. 6.자 결정 18진정0657300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 ..... **660**

[1] 경찰청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전국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  
 [2]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4 2020. 5. 6.자 결정 20진정0155200 【검찰의 벌금 납부 독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 **668**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집행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진정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5 2020. 5. 6.자 결정 19진정0551500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 **675**

[1]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 최○○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2]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보관을 강제할 위험성이 높은 '휴대전화 보관함'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6** 2020. 5. 14.자 결정 19진정0320700 【목욕 중 샤워실 문 외부잠금에 의한 인권침해】 ..... 696

병원장에게, 병동 내 남녀 샤워실을 분리·설치하거나 샤워실 문 또는 잠금장치를 개선하는 등 여성 환자가 목욕 중 샤워실에 부당하게 잠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7** 2020. 5. 14.자 결정 20진정0073200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거부 및 진정서 발송 지연】 ..... 710

【1】 피진정인에게

가.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을 진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의 발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진정함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할 것

【2】 □□시장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8** 2020. 6. 12.자 결정 19진정5007200 【입원적합성심사의 대면조사 미시행】 ..... 719

◇◇정신건강센터장에게

【1】 입원적합성심사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반드시 대면조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

【2】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 신청자에 대해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조사원 재방문 등의 방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업무 지침」에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9** 2020. 6. 12.자 결정 20진정0087500 【정신의료기관 진료과정에서의 CCTV 촬영에 의한 인권침해】 ..... 730

피진정인에게,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심전도 검사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10** 2020. 6. 12.자 결정 20진정0094500 【입원환자의 동의 없는 병실이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738**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병동 이전 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차별행위 조사결정**

**1 2020. 5. 26.자 결정 19진정0741500 【동종업무 수행 전문계약직에 대한 처우 차별】 ..... 745**

피진정인에게, 전산전문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적정 직급 부여 등으로 차별해소 조치를 할 것을 권고

**2 2020. 7. 2.자 결정 20진정0313300 【무자녀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긴급 생활비 미지급】 ..... 756**

피진정인에게, 다문화가정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 자녀 유무 등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권고

**3 2020. 7. 2.자 결정 19진정0875100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계약 연장 배제 차별】 ..... 763**

**【1】** ○○○보건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시장에게,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4 2020. 7. 2.자 결정 19진정0294000 【입직경로를 이유로 한 임금 차별】 ..... 773**

피진정인에게, 2018. 7. 기간제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연구원들과 2018. 7.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된 연구원들 사이에 발생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1 국내서 단행본 ..... 786**